

## NYC Health + Hospitals 개인정보 보호정책 고지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 고지(Notice of Privacy Practices, "NPP")는 환자의 의료 정보와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SUD) 치료 정보가 사용되고 공개되는 방법, 그리고 환자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환자의 건강 정보에 대한 권리, 환자의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 또는 보안 침해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 환자의 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환자는 본 고지의 서면 또는 전자 형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 준법 담당실 소속의 기업 프라이버시 보안 책임자에게([CPO@nychhc.org](mailto:CPO@nychhc.org)) 이메일을 보내 본 고지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서론 및 정보

"NYC Health + Hospitals" 또는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은 연방법, 특히 1996년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및 42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파트 2에 따라 환자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적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고지 제공, 보호되지 않은 기록의 침해 발생 시 환자에게 통지할 의무, 환자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한 설명,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및 환자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본 NPP는 HIPAA 및 42 CFR 파트 2에 따른 환자의 건강 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기타 권리를 설명합니다. 환자는 본 NPP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연방법 및/또는 주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 및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현재 유효한 고지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본 NPP에서 사용된 "건강 정보"란 환자의 건강 관리와 치료, 그러한 서비스 비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이 생성하거나, 수령하거나, 관리하거나 전송하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본 NPP에서 사용된 물질사용장애(SUD) 치료 정보는 연방규정(42 CFR 파트 2)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 종류의 건강 정보입니다.

본 NPP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관련 건강 정보, 정신건강 정보 및 유전 또는 유전자 검사 정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NPP는 모든 급성기 병원 및 관련 클리닉, 모든 Gotham Health 진단 및 치료 센터 및 관련 지역사회 건강 센터, 모든 장기 급성기 치료 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모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NYC Health + Hospitals의 시설, 부서 및 법인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설명합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본 NPP를 수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이미 보관 중인 건강 정보 및 SUD 치료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수령하는 모든 건강 정보 및 SUD 치료 정보에 대해 수정된 NPP를 발효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소속 병원 시설, 부서 및 법인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와 공식 웹사이트에 최신 NPP의 사본(및 발효일)을 게시합니다.

### **치료, 결제 및 의료 서비스 업무를 위한 건강 정보의 사용 및 공개**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는 의료 제공자 또는 기타 직원에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검사, 엑스레이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조율하기 위해 병원의 여러 부서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필요하다면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외부의 담당자에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리 골절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다리 골절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또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환자에게 당뇨병이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와 치료에 대한 결제를 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전 승인을 받거나 건강 보험의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 또는 시술 등에 대한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건강 보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전액 지불한 의료 또는 서비스의 경우 환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스템이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건강 정보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시스템은 환자가 NYC Health + Hospitals에서 받은 외과적 시술에 대한 비용을 건강 보험이 시스템에 지불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비용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해당 시술 정보를 건강 보험에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업무.** 시스템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NYC Health + Hospitals의 환자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또한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 자료나 분석 결과를 얻고자 여러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스템은 계약을 맺은 회계사,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타 전문가에게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치료 및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약 알림.** 시스템은 환자가 특정 시설, 부서 또는 법인에서 진료 예약이 되어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치료, 결제 및 의료 서비스 업무 목적으로 SUD 치료 정보를 공개하려면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건강 정보의 사용 및 공개

NYC Health + Hospitals는 다음의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 전에 환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케팅.** 시스템이 환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전달했거나, 시스템이 환자에게 가치가 크지 않은 홍보용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 구입에 대해 안내할 목적으로 연락할 때는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시스템이 환자에게 연락하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i) 건강 관련 혜택 및 서비스, (ii) 약물 정보, (iii) 대체 치료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의 판매.** NYC Health + Hospitals는 사전 허가 없이 환자의 건강 정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 정보의 사용 및 공개

NYC Health + Hospitals는 아래의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환자의 서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아래 상황에서 SUD 치료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는 42 CFR 파트 2에 따른 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설 디렉터리.** 시스템은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병원 시설의 디렉터리에 환자에 대한 특정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시설 내 위치, 일반적인 상태 및 종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성직자 또는 종교 관련자만이 환자의 종교에 대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러한 건강 정보를 시설의 디렉터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정보 포함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며, 시설의 '입원 접수과'(Admitting) 또는 '건강정보 관리 부서'(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Department)에 연락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활동.** 시스템은 시스템의 시설 및 의료 업무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여 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시스템 관련 재단이나 제휴사와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안내 수신을 거부하려면 [optoutforfundraising@nychhc.org](mailto:optoutforfundraising@nychhc.org)로 서면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기금 조성 안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치료나 기타 혜택 또는 서비스가 거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임상시험에 참여할 경우, NYC Health + Hospitals가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 전에 환자의 서면 허가를 요청할 것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시스템이 연구 조사에 대한 환자의 서면 허가 없이도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구 조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기간 또는 그 이후에 환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 또는 비용 결제에 관여하는 개인.**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스템은 환자의 치료나 비용 결제에 관여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개인.** 시스템은 부모나 후견을 포함한 대리인에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방지.**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재향군인.** 시스템은 군사 지휘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군인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산재보험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활동.** 시스템은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특정 질환, 출생, 사망, 학대, 방치 및 가정 폭력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등의 공중보건 목적으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의료 감독 활동.** 시스템은 감사, 조사 및 검사와 같이 법률로 허가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 감독 기관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환자가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시스템은 법원 명령이나 행정 명령에 따라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또한 분쟁에 관여된 다른 당사자의 소환장, 증거개시 요청 또는 기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해당 요청에 대해 알리거나 요청된 정보를 보호하는 명령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 집행.**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 법 집행 목적으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i) 용의자, 도주자, 중요 증인 또는 실종자를 식별하거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i)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상황에서, (iii) 범죄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의 경우, (iv) NYC Health + Hospitals 시설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v) 긴급 상황에서 범죄, 범죄 또는 피해자의 위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 인상착의 또는 위치를 신고하기 위해.

**사망.** 시스템은 환자의 사망을 통지하는 것이 환자가 서면으로 이전에 명시한 선택 사항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환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권한을 가진 개인, 대리인 또는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는 기타 개인에게 통지하거나 이들을 찾도록 돕기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검시관, 법의관, 장의사 및 장기 기증.** 시스템은 검시관, 법의관, 장의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안구 및 조직 기증의 목적으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 구호.** 시스템은 환자의 가족, 가까운 친척, 대리인 또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통지하여 재난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이나 기타 당국이 허가한 공공 기관 또는 민영 기관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및 정보 수집 활동.** 시스템은 법률로 허용된 정보 수집, 방첩 활동, 기타 국가 보안 활동 등을 위해 허가된 연방 당국에 환자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및 기타 인사에 대한 경호.** 시스템은 연방 당국이 대통령, 기타 당국자, 외국의 국가 원수 등을 보호하거나 특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연방 공무원에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SUD 치료 정보에 대한 특별 프라이버시 보호**

SUD 치료 정보는 42 CFR 파트 2에 따라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으며, 이는 시스템이 환자의 SUD 치료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시스템은 42 CFR 파트 2에서 허용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환자의 SUD 치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42 CFR 파트 2에서 허용하는 의료 응급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SUD 치료 기록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동의.** 단일 서면 동의서는 치료, 결제 및 의료 서비스 업무를 위한 향후 모든 SUD 치료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 결제 및 의료 서비스 업무에 대한 환자의 동의에 따라 파트 2 프로그램, 적용 대상 기관 또는 제휴사에 공개된 SUD 치료 기록은 HIPAA 규정이

해당 공개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파트 2 프로그램, 적용 대상 기관 또는 제휴사에 의해 추가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사용 및 공개.** 시스템은 특정 서면 동의 또는 소환장이 수반된 법원 명령 없이는 환자에 대한 민사, 행정, 형사 또는 입법 절차에서 환자의 SUD 치료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SUD 치료 정보는 환자 또는 시스템이 통지를 받고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만 법원 명령에 따라 사용되거나 공개됩니다.

**기금 조성 공개.** 시스템은 환자에게 기금 조성 안내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만 파트 2 프로그램의 이익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SUD 치료 기록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기금 조성 안내의 수령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본 고지에서 설명하지 않은 SUD 치료 정보의 사용 및 공개는 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SUD 치료 정보의 사용 및 공개는 42 CFR 파트 2에서 허용하는 경우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건강 정보에 관한 권리**

환자는 시스템이 보관하는 본인의 건강 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접근 및 복사에 대한 권리.** 환자는 본인의 건강 정보에 접근 요청을 하고 사본을 입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정신치료 소견서 및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환자는 본인이 선택한 형식으로 본인의 의무 기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환자 건강 정보의 사본에 접근하거나 이를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설이나 법인의 건강 정보 관리부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스템은 제한적 상황에서 환자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거절 사유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환자 권리를 설명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의무 기록의 복사 비용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요청한 건강 정보가 어떠한 사유로든 지연되거나, 요청한 건강 정보를 요청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요청된 정보를 발송하기 전에 예상 수수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정할 권리.** 시스템이 보관하는 환자의 건강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는 시스템이 본인의 건강 정보를 보관하는 한 해당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환자 건강 정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설이나 법인의 건강 정보 관리부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한적 상황에서 시스템은 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거절된 경우, 시스템은 거절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 내역 설명에 대한 권리.** 환자는 시스템이 환자의 건강 정보를 공개한 내역을 열거한 "공개 내역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목록에는 환자의 치료, 비용 결제 또는 의료 서비스 업무 등을 위해 공유한 정보나, 환자의 허가를 받아 공개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 내역 설명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설이나 법인의 건강 정보 관리부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요청서에는 6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2003년 4월 14일 이전의 날짜가 아닌 공개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 환자가 요청하는 첫 번째 목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목록에 대해 시스템은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요청할 권리.** 환자는 시스템이 치료, 비용 결제 또는 의료 서비스 업무를 위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본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시스템이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처럼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는 개인에게 환자에 대해 공개하는 건강 정보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권리도 가집니다. 환자 건강 정보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설이나 법인의 건강 정보 관리부서, 입원 접수과 또는 등록부서(Registration Department)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스템이 환자의 제한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동의할 경우, 해당 건강 정보가 환자에게 응급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스템이 환자의 요청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대안적 의사소통 방법을 요청할 권리.** 환자는 시스템에 의학적 사안이나 본인의 건강 정보를 대안적 방법이나 장소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안적인 전달 방법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설이나 법인의 건강 정보 관리부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요청서에는 희망하는 연락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환자에게 요청 사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합당한 요청 사항을 수용할 것입니다.

**정보 침해 시 통지를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건강 정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되었거나, 접근되었거나, 사용된 경우와 환자 건강 정보의 보호 위반("침해"라고도 함) 가능성을 시스템이 확인한 경우 이를 통지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환자 건강 정보가 침해된 경우, 침해가 확인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립니다.

**NPP 사본에 대한 권리.** 환자는 본 NPP의 사본을 언제든지 입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환자는 또한 NYC Health + Hospitals 웹사이트 <https://www.nychealthandhospitals.org/>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설이나 법인의 건강 정보 관리부서, 입원 접수과 또는 등록부서에 연락하여 본 NPP의 사본을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철회에 대한 권리.** 시스템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환자가 허가한 경우, 그러한 허가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철회할 경우, 시스템은 환자의 서면 허가서에 포함된 사유로 환자의 건강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환자의 허가를 받아 이미 실행된 공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원.** 환자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환자의 건강 정보(SUD 치료 정보 포함)가 부적절하게 접근, 사용 또는 공개되었다고 생각되거나,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 준법 담당실 소속의 기업 프라이버시 보안 책임자에게 이메일 [CPO@nychhc.org](mailto:CPO@nychhc.org)로 연락하거나, 시스템의 무료 준법 감시 핫라인 1-866-HELP-HHC(1-866-435-7442)를 통해 익명으로 비밀을 유지하며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원을 접수할 권리도 가집니다. *환자는 민원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SUD 치료 정보에 관한 추가 권리:**

환자의 SUD 치료 정보와 관련하여 환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치료, 결제 및 의료 서비스 업무 목적으로 사전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공개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권리.
- HIPAA가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공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자가 전액 지불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 보험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에 제한을 두도록 요청하고 이를 수락 받을 권리.
- 지난 3년간의 전자 기록 공개 내역의 설명을 받을 권리 및 동의 하에 이루어진 기타 모든 공개에 대해 HIPAA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개 내역의 설명을 받을 권리.
- 지난 3년간 중개인에 의한 공개 목록에 대한 권리.